

- 제252회 임시회 -

# 심사보고서

연번	목 록	심사결과	비고
1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7. 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20. 10. 7.
- 다. 상 정 일 자 : 2020. 10. 16.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 위탁범위 :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조건 : 협약에 의함
- 위탁방법 :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2009. 10. 26. 개관
- ㉠ 위탁기간 2019. 10. 1.~ 2024. 9.30.까지 재위탁하여 현재까지 학교 법인 설봉이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인 산하 동부산 대학교의 폐교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탁운영 을 포기함으로써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효율적인 관리 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 ㉠ 수탁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2020. 12. 1.부터 2025. 11. 30.까지 위탁기간이 됨.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반여2,3동은 1972년 정책이주민 이주 후 20년 9월 현재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구 전체 주민의 13.2%를 차지,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욕구가 많은 지역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학교법인 설봉이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최초 위탁받아 지금까지 지역 내 주민복지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 주민과의 신뢰감, 네트워크 형성, 지역자원연계 등 지속성과 연속성을 염두에 둔 전문성을 확보한 법인, 단체 등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첨부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선정계획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현 수탁법인 운영포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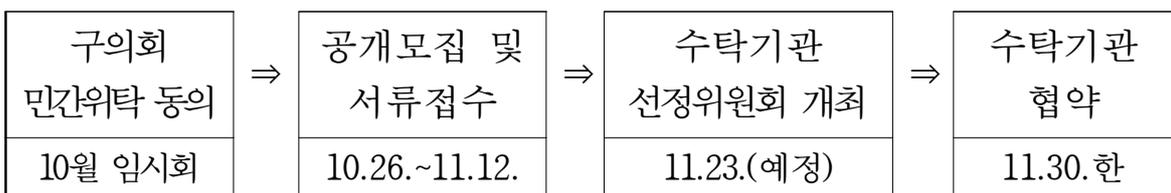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등

## II 위탁개요

- 위탁대상 : 반여종합사회복지관(반여2동어린이집 포함)  
 ※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포함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면적 (㎡)	위탁기간	수탁기관	관장	지원예산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재반로 226번길 13-73	22명	1,459	2019.10.1.~현재	학교법인 설봉	김창근 (77.2.15.)	731,100천원 (시·구비)

- 위탁기간 : 2021.1.1.~2025.12.31.(5년)
- 예산지원 : 연 731,100천원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 위탁범위 : 복지관업무 및 시설물 관리 전반(주차장, 경로당 제외)
- 추진절차



※ 12.1.~12.31.(법인 인계인수기간)

### Ⅲ 세부추진계획

#### ○ 수탁자 모집공고

- ▷ 공고기간 : 2020. 10. 26. ~ 2020.11. 9. (15일)
- ▷ 접수기간 : 2020. 11. 10. ~ 2020. 11. 12. (3일간)
-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수탁운영 신청서 1식
- ▷ 수탁기관 재공고 및 추가접수 : 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이하인 경우

#### ○ 신청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비를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 위탁공고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 【 신청제외대상 】

- 가.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 나.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수탁자 선정심사 ※ 별도계획 수립

- ▷ 일 시 : 2020. 11. 23. 예정
- ▷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9인 이내
- ▷ 심사항목 : 수탁법인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사업실적, 재정적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방법

- 법인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 점수가 같은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들의 표결로 수탁자 결정
- 재공고시 신청 법인이 하나인 경우라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한 평균 배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탁자로 추천

▷ 심사발표 : 해운대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위탁계약 체결 ※ 별도계획 수립

▷ 계약시기 : 2020. 12월 중

▷ 계약기간 : 2021. 1. 1. ~ 2025. 12.31.(5년)

## **IV** 향후일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소통협력과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0년 11월중
- 위탁사무 인계·인수 '20년 12월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7. 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20. 10. 7.
- 다. 상 정 일 자 : 2020. 10. 16. (1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가족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폐지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정기휴무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폐지된 재송동청소년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 규정 삭제
- 문화의집 정기휴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 안 제3조제1항제2호 재송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과 동일 건물 내 중복 설치된 청소년활동시설로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으로 통합, 폐지되었기에 삭제하고
- ㉠ 안 제11조는 현실 상황 등을 반영,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제1호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제2호 매주 월요일

제3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함

이상 검토 결과 폐지된 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정기휴무에 대한 내용을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치 및 시설의 설치) ① 문화의 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재송동, 청소년 수련관 내)</u></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신정, 설연휴, 추석연휴</u></p> <p>2. <u>국경일</u></p> <p>3. <u>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u></p>	<p>제3조(위치 및 시설의 설치)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정기휴무) ----- -----.</p> <p>1. <u>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u></p> <p>2. <u>매주 월요일</u></p> <p>3.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7. 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20. 10. 7.
- 다. 상 정 일 자 : 2020. 10. 16.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용도를 확대하여 기금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운용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근거 추가 (안 제1조)
- 상위법령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 정비 (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안 제6조)
  -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하며,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정비 (안 제7조)
- 기금의 운용심의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근거 추가(안 제9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 안 제1조, 기금 운용 근거 보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추가
- ㉠ 안 제3조, 상위법령에 따라 ‘법정적립액’ 을 ‘매년도 최저적립액’ 으로 함
- ㉠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관련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 공공분야 재난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예산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 예외를 규정하고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안전조치 등을 위해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
  - ▷ 같은 조 제6조제2호가목2) 별표 1 신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9조는 각각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추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심의 근거를 간결하게 보완 정비하였기에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통일성 있게 명확한 용어 정리

( “구 금고” → “지정된 금고” 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 부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b>구 금고</b> 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b>지정된 금고</b> 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

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지정된 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남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별표 1과 같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용자되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용자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10. 7. 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20. 10. 7.
- 다. 상 정 일 자 : 2020. 10. 16. (1차 회의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임.

### 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규정 보완(안 제2조)
- 단장 해임 사유 신설(안 제4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규정 보완(안 제5조)
- 여비 지급 규정 보완(안 제8조)
- 재해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 안 제2조, 안 제3조, 방재단의 조직,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등 조문 정비
- ㉢ 안 제4조, 안 제5조, 단장 및 단원 해임에 관한 사항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에서 단원 해임에 관한 사항 심의토록 신설

㉠ 안 제6조제2항제4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추가

‘재난 유형, 재난취약계층, 성별 등을 고려한 대응방식에 대한 교육…’

㉡ 안 제7조, 안 제8조, 각각 방재단의 소집 원칙과 안 제8조제9항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방재단 활용 내용 및 지원 범위 조문 정비

㉢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방재단원 금지행위, 중앙지원단에 방재단의 조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방재활동과 관련한 재해보상 내용 각각 신설

㉣ 별지 제1호 ~ 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자율적인 방재 활동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관련 법 개정으로 활동 지원 기준과 재해보상 지원내용 신설 등 방재단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제6조제2항제8호 :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구 수정  
(“전염병” → “**감염병**”으로 수정)
- 제8조제6항 : 예산편성 기간에 맞춰 활동계획서 제출기간 변경  
(“11월말” → “**8월말**”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 부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방재단의 임무)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6조(방재단의 임무)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8. 전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제8조(운영 등)⑥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⑥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지역자율방

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은 해당 동에 주소를 둔 20명 이내의 개인으로 구성한다.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다.

⑥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며, 단체 방재단의 대표는 가입신청 시 기입한 대표자로 지정한다.

⑦ 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의 단원은 구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⑦ 단체 대표의 임기에 관하여는 해당 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4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의 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방재 정책
2. 방재단의 활동방향
3.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 4.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단체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4. 재난 유형, 재난취약계층, 성별 등을 고려한 대응방식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

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한 이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③ 방재단은 구 이외의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마을)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구 재난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 ⑧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⑨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금지 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구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지역자율방재단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방재활동 관련 재해보상)** ① 방재활동과 관련한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

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동순위자가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재해보상금 전액을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방재단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